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483
------	------

2026. 3. 1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02월 09일, 황유정 의원(찬성자 15명)
- 회부일자 : 2026년 02월 12일
-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황유정 의원)

1. 제안이유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표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육성계획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방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민 공표 방식을 ‘서울시보 게재’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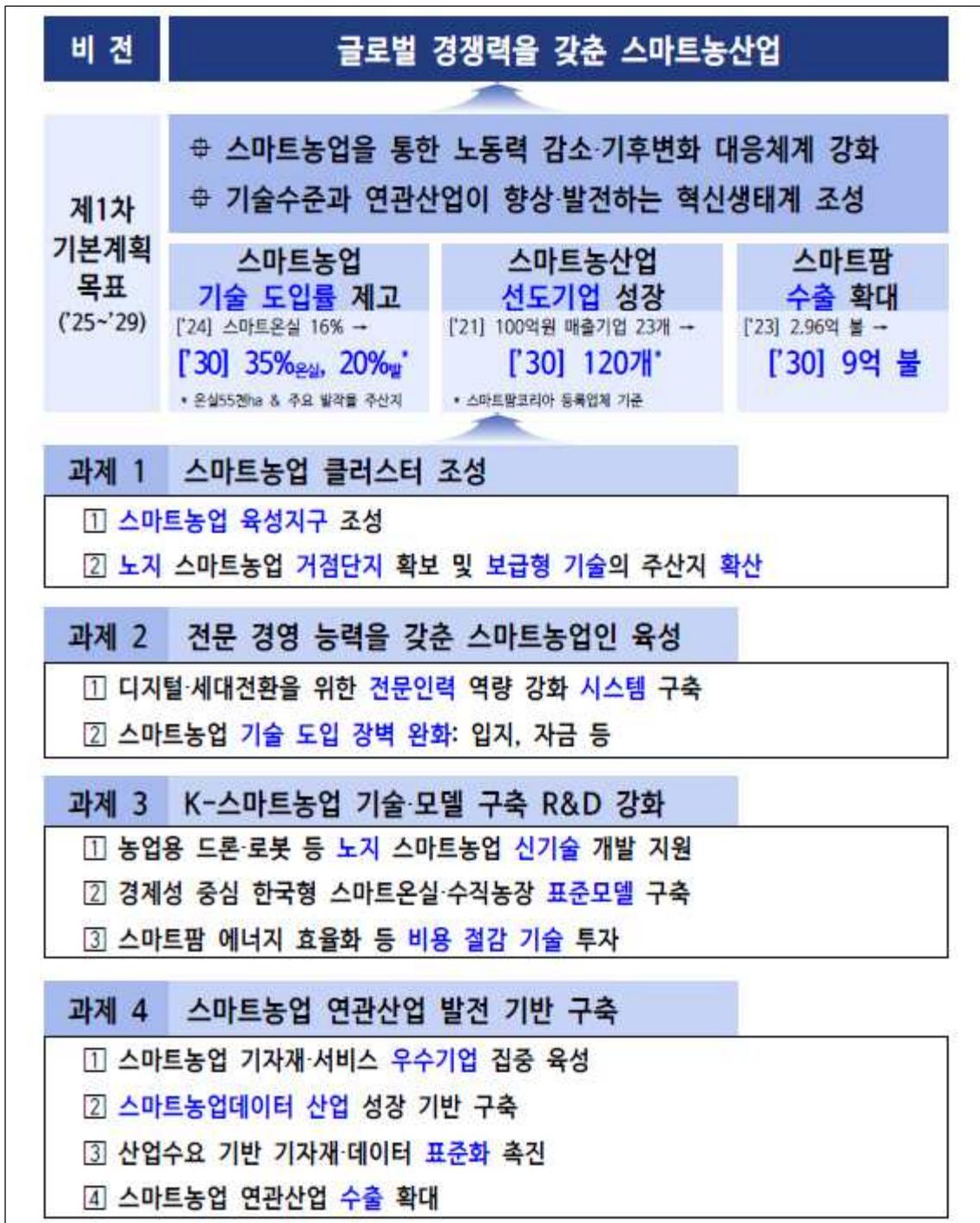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공표 방법을 서울시보에 게재토록 함으로써 상위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표 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현황

-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지칭함.
- 최근 기후위기, 농업 성장 동력 약화 등에 따라 농산업 혁신과 성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이 2023년 7월 25일 제정됨(2024년 7월 26일 시행).
- 스마트농업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년~2029년)”과 “2026년 스마트농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추진체계 >



- 그러나 상위법 및 동 조례에서 육성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농지 면적 및 농업 생산 규모가 제한적인 도시형 농업 구조를 이유로 별도의 육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3.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공표방법 구체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공표 방법을 서울시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변경된 사항을 <u>시민에게 공표</u> 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 ③ ----- ----- ----- ----- <u>서울시보에</u> <u>게재하여 시민</u> -----.

-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스마트농업법 제5조에서는 시·도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시·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 2. 지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지역의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자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서울시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표 방법에 관한 사항을 현재 까지 규정하지 않아 입법 공백을 야기하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은 공표 방법을 서울시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정비하여 법적 미비 상태를 해소하고 공표절차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특히 서울시보는 서울시의 공식 공보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 공표 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계획의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조치로 판단됨.
- 한편 법제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¹⁾에 따라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자치법규의 정비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현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4년 4분기부터 법제처로부터 동 조문의 입안 필요성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동 개정사항은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필수조례 제때 마련율²⁾” 지표에 반영되는 조례로서, 2025년 2월 서울시에 관련 내용이 통보된 바 있음³⁾.

1)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⑤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2)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꼭 마련해야 할 필수조례 중에서 해당 지자체가 실제로 마련한 필수조례의 비율

- 이처럼 동 조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상위법 위임 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유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83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황유정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윤종복,
이성배, 이효원,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허·훈
의원(15명)

1. 제안이유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표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육성계획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방법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 공표 방식을 ‘서울시보 게재’로 규정함(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시민”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시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 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변경된 사항을 <u>시민</u>에게 공표하여야 한다.</p>	<p>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 ③ ----- ----- ----- ----- ----- <u>서울시보에 게재하</u> <u>여 시민</u>----- -----.</p>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공표 방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공표)으로, 이는 조례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을 정비한 것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경 명

☎ 02-2180-7954

e-mail : kimkmi080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